

위원회 설치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아마추어무선의 기술적인 연구 개발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내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 및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.

제 2 조 (설치) ① 위원회는 무선국관리규정 제28조에 정한 중계기위원회 외에 전문분야별로 교육위원회, 사회봉사위원회, 여성위원회, 자율지도위원회, 재무위원회, 전산화위원회, 전신위원회, 편집위원회, ARDF위원회, DX위원회, 국제위원회, 홍보위원회, 재물관리위원회, 통신위원회, QSL위원회, 청년위원회와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중계기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무선국관리규정 제26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.

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자료의 수집 및 배포와 회원에 대한 교육활동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④ 사회봉사위원회는 회원들의 사회 봉사활동 및 재난통신 활동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⑤ 여성위원회는 여성 아마추어무선사를 규합하여 참여활동 및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⑥ 자율지도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신질서 확립 및 올바른 전파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며 무선국관리규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.

⑦ 재무위원회는 연맹의 회계업무 및 재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⑧ 전산위원회는 KARL 웹사이트 관리 및 전산화 업무의 개발과 KARL 웹사이트관리규정 제4조 내지 제9조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⑨ 전신위원회는 전신기능 인정규정관리 및 회원의 전신기능의 교육과 보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구성은 위원회의 세칙에 준한다.

⑩ 중계기위원회는 주파수의 활용도에 따른 연구와 KARL 밴드플랜 및 중계기의 운용주파수 조정과 개.폐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무선기기의 연구와 포괄적인 통신기술업무를 관장하고 구성은 제②항의 세칙에 준한다.

⑪ 편집위원회는 연맹의 회보 발간과 취재 및 간행물 등의 편집업무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⑫ ARDF위원회는 전파를 이용한 스포츠 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⑬ DX위원회는 원거리 통신기법의 연구와 자료의 수집과

분석,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⑭ 국제위원회는 IARU, IARU Region 3 및 외국 연맹과의 유대강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⑮ 홍보위원회는 연맹관련자료 취합 정리 및 대외홍보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⑯ 재물관리위원회는 연맹 재물 및 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⑰ 통신위원회는 연맹 무선설비 운영 및 통신 장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⑱ QSL위원회는 국내외 QSL카드의 중계 전송 관련 업무를 분장한다.

⑲ 청년위원회는 청소년, 대학생, 청년 회원의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장려하고 청년 관련 행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⑳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하는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두며, 이사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폐할 수 있다.

제 3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, 외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,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 위원(장)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,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가장 최근에 임명된 위원의 잔임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 및 위원에게 징계의 조치가 확정되었을 시에는 해임되고, 이사장은 위원장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제 4 조 (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업무에 따라 담당이사와 협조하고 이사회에 보고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.

③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 합동 회의를 할 수 있다.

④ 각 위원회에서는 연맹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이나 행사를 마친 후, 그 결과나 관련 내용을 KARL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분과위원회) ① 각 지역본부에는 필요한 경우
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장은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며 구성 및 직무에
관하여서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이사회 의결 직후
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개 정)

① 2023. 12. 9. 제2조 ①항 개정, ⑪항 삭제, ⑯, ⑰, ⑱,
⑲항 신설